

**2025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2025. 12. 2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5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2025. 12. 26.)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및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 12. 2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자 자격) 예비자 자격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지되고,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2026. 11. 22.) 예비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신청자격

공통	공고일 현재(2025. 12. 26.)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세부 요건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 요건	검증 불필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요건	검증 불필요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총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2. 입주자 선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 공급대상주택: 총 716호

○ 신규공급 : 521호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합계			521호				
강동구	신우드림빌[천호동] (강동구 상암로35길 10, 천호동 38-8)	14호	4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10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43A		
	초행지봉 천호 (강동구 상암로41길 75-11, 천호동 27-18)	5호	1호	다가구 (개방형 원룸)	29B	없음	자주식 (지상)
	신우드림빌[고덕동] (강동구 상일로23길 7-16, 고덕동 180-5)	19호	13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28A	있음	자주식 (지상)
			2호		33A		
			4호		45A		
	희망 (강동구 진황도로33길 45, 천호동 181-10)	17호	4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8호		29B		
			2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7A		
			3호		40A		
강북구	블루밍하우스 (강북구 노해로23길 80-5, 수유동 744)	13호	7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3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2A		
			3호		37A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강북구	홍원 루미에르 강북11 (강북구 삼양로118길 4-11, 수유동 332-30)	19호	1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4호		30B		
			4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9A		
	새샘 (강북구 삼양로136길 8, 수유동 279-56)	24호	4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18호		30B		
			2호		34B		
	프롬하우징 (강북구 삼양로99길 10, 수유동 392-132)	20호	14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40A	있음	자주식 (지상)
			4호		44A		
	강서구	샤론빌리지 (강서구 강서로18길 44-1, 화곡동 393-14)	15호	15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6A	있음
범우데시앙 (강서구 강서로20길 16, 화곡동 338-29)		30호	10호	오피스텔 (분리형 원룸)	31A	있음	자주식 (지상, 지하)
			20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2A		
Step on 화곡 1083-14 (강서구 화곡로20길 19-32, 화곡동 1083-14)		14호	4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7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9A		
			2호		45A		
		1호	도시형생활주택 (투룸)	52C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광진구	인화빌 주거축물제1동 (광진구 긴고랑로5길 27, 중곡동 233-2 외 1필지)	16호	9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6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7A		
			1호		50A		
	중곡에스하임4 (광진구 면목로 140, 중곡동 700)	39호	4호	연립주택 (분리형 원룸)	35A	있음	자주식 (지상)
			16호		38A		
			19호		41A		
마포구	동원스위트 (마포구 동교로17길 93, 성산동 242-6)	19호	8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4B	있음	자주식 (지상)
			4호		26B		
			2호		29B		
			1호		34B		
			4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42A		
	삼화에코빌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62, 성산동 242-24)	17호	6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6A		
			3호		42A		
서초구	예미담 (서초구 논현로5길 23-7, 양재동 400-11)	14호	1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2호		34B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송파구	명칭없음 (송파구 도곡로62길 11-8, 잠실동 304-17 외 1필지)	19호	18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44A		
	현도빌리지9 (송파구 송이로6길 6-1, 송파동 101-15)	11호	6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5호		33B		
	포엠빌 (송파구 동남로2길 11, 문정동 45-8)	15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5B	있음	자주식 (지상)
			3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29A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2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4A			
1호			도시형생활주택 (투룸)	49C			
펠리스빌 (송파구 양재대로71길 42-23, 방이동 196-2)	12호	8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3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9A			
서도휴빌 (송파구 풍성로14길 20, 풍납동 516)	95호	20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전기차 (지상)	
		25호		29B			
		50호		32B			
영등포구	아트라움 (영등포구 신길로8길 10, 신길동 4668-4)	15호	12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1A	있음	자주식 (지상)
			3호		37A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은평구	삼화에코빌 (은평구 불광로8길 4, 불광동 8-12)	17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3B	있음	자주식 (지상)
			7호		26B		
			7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6A		
			1호		45A		
중랑구	엠제이캐슬 (중랑구 동일로124길 19, 중화동 295-16)	12호	7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4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1A		
			1호		39A		
	스위트휴 (중랑구 동일로151길 19-1, 묵동 245-78)	16호	8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8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8A		
	파크빌 (중랑구 봉우재로5길 9-28, 면목동 191-124)	18호	10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2호		29B		
			4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1A		
			2호	도시형생활주택 (투룸)	46C		
	포엠빌 (중랑구 중랑역로 122-40, 중화동 307-48)	16호	5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2호		30B		
			7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6A		
2호			42A				

○ 재공급 : 195호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합계			195호				
강남구	*희준빌 (강남구 논현로121길 35, 논현동 173-5)	12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백년빌 (강남구 논현로57길 39, 도곡동 547-2)	19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없음	자주식 (지상)
	*백년빌 (강남구 학동로20길 63-6, 논현동 158-26)	12호	1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4B 29B	없음	자주식 (지상)
강동구	*천호해마루 3차 (강동구 구천면로33길 37-9, 천호동 577)	10호	1호	다세대 (분리형 원룸)	28A	없음	자주식 (지상)
	*와이디하우스2차 (강동구 구천면로35길 24-9, 천호동 299-13 외 1필지)	16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6A		
	*와이디하우스 (강동구 구천면로35길 27, 천호동 391-21 외 1필지)	15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8A	없음	자주식 (지상)
	해담빌 (강동구 구천면로40길 7, 천호동 237-27 외 1필지)	16호	1호	다세대 (분리형 원룸)	29A (남성)	없음	자주식 (지상)
	*상일프라임 (강동구 상일로5길 10-5, 상일동 274-5)	19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29A	있음	자주식 (지상)
	*현도빌리지 V (강동구 아리수로66길 14, 고덕동 532-1)	9호	1호	다세대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은슬림7 (강동구 진황도로23길 20-1, 천호동 541-2 외 1필지)	10호	1호	오피스텔 (분리형 원룸)	26A	있음	자주식 (지상, 지하)
*은슬림8 (강동구 진황도로23길 22, 천호동 541 외 6필지)	37호	2호	오피스텔 (분리형 원룸)	30A	있음	자주식 기계식 (지하)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강동구	*플래티넘7 (강동구 진황도로27가길 21, 천호동 191-15)	38호	7호	다세대 오피스텔 (분리형 원룸)	29A	있음	자주식 (지상, 지하)
	*HwellsPARK천호 I (강동구 진황도로29길 35-3, 천호동 167-32)	19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27A	있음	자주식 (지상)
	*더클래스 길동2 (강동구 천중로49가길 47, 길동 342-30)	10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5B	있음	자주식 (지상)
	WISH희망 (강동구 천호옛8길 3, 성내동 127-13 외 1필지)	12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40A	있음	자주식 (지상)
강북구	*홍원하이빌강북7 (강북구 삼양로119길 22, 수유동 313-6)	22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1B	없음	자주식 (지상)
	*북한산파크빌 (강북구 삼양로169길 24-36, 우이동 163-8 외 1필지)	12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미래하이츠 (강북구 수유로23길 31, 수유동 1-4)	12호	1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8A 43A	있음	자주식 (지상)
	*다드림12차 (강북구 인수봉로55길 33-22, 수유동 508-99 외 1필지)	16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강서구	염창동 도시형생활주택 주건축물 1동 (강서구 공항대로75길 47, 염창동 263-11)	60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	있음	자주식 (지상)
관악구	*나르하우스 (관악구 관천로15길 31, 신림동 470-25 외 1필지)	14호	1호	다세대 (분리형 원룸)	35A	있음	자주식 (지상)
	*스테이션III (관악구 남부순환로 1542, 신림동 1577-33)	24호	1호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T&K신림 II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39, 신림동 1663-21)	17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관악구	*신림파크빌 (관악구 남부순환로155길 30, 신림동 505-10 외 1필지)	16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2A	있음	자주식 (지상)
			1호		36A		
광진구	구의 에스하임 1 (광진구 광나루로30나길 15, 구의동 638-5 외 1필지)	13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여성)	없음	자주식 (지상)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7A (여성)		
	명칭없음 (광진구 긴고랑로1길 35, 중곡동 235-22 외 1필지)	13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9A		
자양에스하임11 (광진구 아차산로46가길 10-3, 자양동 218-9)	17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29A (여성)	없음	자주식 (지상)	
구로구	*라온에코빌 (구로구 가마산로20길 56, 구로동 329-48 외 1필지)	14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1A	있음	자주식 (지상)
	백년빌 (구로구 개봉로17길 30-4, 개봉동 326-12)	10호	3호	다세대 (투룸)	53C	없음	자주식 (지상)
	비전파크타운 나동 (구로구 경서로5길 7-6, 고척동 133-14 외 2필지)	17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없음	자주식 (지상)
	*오류동 청년주택 (구로구 경인로27길 13, 오류동 31-121)	88호	5호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기계식 (지상, 지하)
	*에이스빌 (구로구 경인로33가길 25, 개봉동 147-3 외 1필지)	19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	없음	자주식 (지상)
	개봉파크빌 I (구로구 경인로33라길 36, 개봉동 139-1 외 1필지)	14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없음	자주식 (지상)
	개봉파크빌 II (구로구 경인로33마길 4-7, 개봉동 131-5 외 2필지)	17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없음	자주식 (지상)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구로구	*석운주택 (구로구 고척로21가길 2-9, 개봉동 33-125)	15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0B	없음	자주식 (지상)
	*하늘사랑채 (구로구 고척로21가길 32-10, 개봉동 33-72)	15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1B	없음	자주식 (지상)
	*하늘사랑채5차 A동 (구로구 고척로27다길 39-11, 고척동 241-112)	19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19B	없음	자주식 (지상)
	*하늘사랑채5차 B동 (구로구 고척로27다길 39-7, 고척동 241-116)	19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19B	없음	자주식 (지상)
	광성주택 (구로구 고척로37길 21, 고척동 251-47 외 1필지)	21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없음	자주식 (지상)
	*명진하이빌 (구로구 부일로17길 44, 궁동 190-84 외 1필지)	20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0B	없음	자주식 (지상)
	*하늘사랑채7차 (구로구 안양천로537가길 18-8, 고척동 62-85)	15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19B	없음	자주식 (지상)
	*대정이오스 (구로구 오리로13길 50, 오류동 240-7)	16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예하임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6-50, 궁동 134-7)	29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21A	있음	자주식 (지상)
금천구	*아이유하임 (금천구 독산로 293, 독산동 1162)	135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지하)
	*스타힐스 (금천구 독산로23길 19, 시흥동 840-34 외 1필지)	15호	1호	다세대 (분리형 원룸)	30A	있음	자주식 (지상)
	*SHIN YOUNG (금천구 범안로11길 60, 독산동 333-14)	228호	2호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지하)
	*서전하우스 (금천구 범안로12가길 31-10, 독산동1006-167)	15호	5호	다세대 (개방형 원룸)	21B	있음	자주식 (지상)
	*서전하우스 (금천구 범안로12길 29-34, 독산동 1006-143 외 1필지)	26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3B	있음	자주식 (지상)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금천구	*1동 (금천구 범안로12길 50, 독산동 1005-3)	32호	3호	오피스텔 (분리형 원룸)	29A	있음	자주식 기계식 (지상)
동대문구	제기흙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가길 21, 제기동 846-23 외 1필지)	17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	없음	자주식 (지상)
	삼화에코빌2차 B동 (동대문구 답십리로65길 114, 장안동 287-7 외 1필지)	10호	1호	다세대 (투룸)	35C (여성)	있음	자주식 (지상, 지하)
	*휘경 에스하임 (동대문구 망우로 109, 휘경동 75-6)	93호	15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지하)
			2호		28B		
	*제이하우스 (동대문구 제기로6길 38, 제기동 67-236)	12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있음	자주식 (지상)
	더존에이스빌 가동 (동대문구 천호대로89길 51, 장안동 445-3 외 1필지)	10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3A (남성)	없음	자주식 (지상)
동작구	*초행지붕-상도 (동작구 양녕로22바길 20, 상도동 214-425)	5호	1호	다가구 (개방형 원룸)	28B	없음	자주식 (지상)
서대문구	제이씨아트빌2차 (서대문구 명지대5길 13, 남가좌동 3-68)	16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 (여성)	없음	자주식 (지상)
	주영테크빌 (서대문구 증가로12가길 68, 북가좌동 5-92)	19호	4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17B	없음	자주식 (지상)
	명칭없음 (서대문구 증가로8길 68-24, 홍은동 411-5)	14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	없음	자주식 (지상)
서초구	백년빌 (서초구 논현로5길 24-10, 양재동 395-10)	16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6B	없음	자주식 (지상)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3A		
	백년빌 (서초구 논현로7길 36, 양재동 392-20)	17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없음	자주식 (지상)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성동구	*명칭없음 (성동구 가람길 267, 용답동 238-7)	156호	2호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0B	있음	자주식 (지하) 기계식 (지상)
	*마장동 564-7 청년주택 (성동구 고산자로17길 9-1, 마장동 564-7)	14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1B	없음	자주식 (지상)
	*명칭없음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93, 용답동 238-5)	349호	2호	오피스텔 (분리형 원룸)	-	있음	자주식 (지하) 기계식 (지상, 지하)
성북구	드림빌2차 (성북구 서경로13길 33, 정릉동 227-149)	20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	없음	자주식 (지상)
	광진흙 (성북구 솔샘로6가길 42, 정릉동 316-13)	23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	없음	자주식 (지상)
	서도휴빌 (성북구 장월로1마길 23, 하월곡동 231 외 1필지)	30호	5호	도시형생활주택 (투룸)	- (남성)	없음	자주식 (지상)
	*정목빌 (성북구 장월로28길 49, 장위동 76-330 외 2필지)	19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미래하이츠 (성북구 회기로3길 8, 종암동 28-27)	16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50A	있음	자주식 (지상)
송파구	*드림네스트 (송파구 가락로5길 3-75, 석촌동 237-16 외 1필지)	19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서도휴빌 (송파구 문정로5길 3-34, 문정동 13-7)	18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4B	있음	자주식 (지상)
	*유케이타운 (송파구 삼전로10길 54, 삼전동 116-3)	11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광채빌라 (송파구 삼전로2길 49, 삼전동 53-19)	16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서영스윗홈 (송파구 오금로27길 50-11, 방이동 211-10)	10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40A	있음	자주식 (지상)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송파구	*네스트197 (송파구 오금로46길 65, 가락동 197-3)	19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3B	있음	자주식 (지상)
	*티엘하우스 (송파구 중대로14길 6, 가락동 129-11)	8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양천구	*에코리움빌 (양천구 남부순환로56가길 14, 신월동 197-8 외 1필지)	18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2B	없음	자주식 (지상)
			1호		28B		
	*에코리움빌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12-10, 신월동 197-11)	18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없음	자주식 (지상)
	*다운 빌리지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0길 35, 목동 231-36)	11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9A	있음	자주식 (지상)
	*T&K신정 (양천구 오목로38길 23-5, 신정동 960-21 외 1필지)	16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5A	있음	자주식 (지상)
영등포구	*민하우스2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5, 대림동 680-3)	12호	1호	다세대 (분리형 원룸)	41A	있음	자주식 (지상)
	*삼정리버뷰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4, 문래동5가 20-21)	26호	2호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Oaktreevil DR2 (영등포구 대림로35길 8-1, 대림동 775-11)	19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27A	있음	자주식 (지상)
	*경동파크빌 (영등포구 대림로35나길 14, 대림동 737-2)	12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상)
			1호	도시형생활주택 (분리형 원룸)	35A		
*명칭없음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28, 양평동1가 208-1)	28호	3호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0B	있음	자주식 (지상) 기계식 (지상, 지하)	

대상주택		총 세대수	공급호수	유형	주택형	승강기	주차장
영등포구	*로프트시티 (영등포구 영등포로 244, 영등포동3가 3-3 외 2필지)	193호	1호	오피스텔 (개방형 원룸)	20B	있음	자주식 (지하) 기계식 (지상)
	*삼정주택 (영등포구 영신로47길 13-1, 당산동1가 230)	15호	2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은평구	*리츠하우스2 (은평구 갈현로11가길 14-4, 구산동 177-53)	23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19B	있음	자주식 (지상, 지하)
	*초행지붕 구산 A동 (은평구 갈현로11가길 3, 구산동 511)	12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9B	있음	자주식 (지하)
	*응암 에코타운 (은평구 은평로16길 12, 응암동 72-6)	19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7B	있음	자주식 (지상)
중구	*남산의 아침 B동 (중구 필동로8길 50-9, 필동2가 84-12 외 1필지)	15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중랑구	*도원휴먼빌 (중랑구 동일로123길 76, 중화동 315-31)	21호	8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18B	없음	자주식 (지상)
	*도원휴먼빌 (중랑구 동일로169가길 27, 묵동 235-32)	17호	3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19B	없음	자주식 (지상)
	*드림빌 (중랑구 숙선옹주로3길 20-3, 묵동 301-6)	18호	1호	도시형생활주택 (개방형 원룸)	28B	있음	자주식 (지상)

- 동호, 면적, 개별호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상세내역은 2. [주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의 호실 구조 및 건물 전경 등은 3. [첨부] 도면 및 사진(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호실별 전용면적(m²)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시설이 운용되는 주택 등의 경우 위탁관리에 의한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금액은 주택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규공급 대상주택은 신규 준공 및 매입 후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이며, 재공급 대상주택은 기공급 주택에서의 미계약,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입니다.
- 신규공급 대상주택의 경우 전세형으로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재공급 대상주택의 경우 일반형으로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재공급 대상주택 목록 중 주택명 앞 별표(*) 표시가 되어있는 주택에 한해 금회 신규공급 주택과 동일하게 전세형으로 공급(임대료의 8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합니다.
- 신규 및 재공급 대상주택 모두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의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과 부대시설은 주택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첨부] 도면 상 표기된 비품은 건축 설계상 참고용으로, 비품의 구비 여부는 주택의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품 구비 여부는 당첨 후 주택 사전점검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중 일부 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간이 존재하여 공동체 활동 운영 등 입주자 자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신규공급 대상 주택 중 일부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임시이주 등으로 일부 호실에 입주자가 존재하는 주택이 있으며, 해당 호실을 제외한 이번 공급대상 주택은 신규 준공 및 매입 후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입니다.
 - ※ 신규공급 대상 주택 중 향후 위탁관리인력 계약 등으로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재공급 대상 주택 중 최초 공급 시 지정한 성별에 따라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된 주택이 있으며, 주택 별 준공년도 및 내·외부 환경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표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신청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 ↔ 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최장 20년)이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소득, 자산 등) 충족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감정평가액의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합니다. 	
상호 전환 제도	<p>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보증금 ↑, 월 임대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비율 :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 연 6.7% • 낮출 월임대료 금액 X 12(개월) ÷ 0.067(6.7%) = 추가 임대보증금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p>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보증금 ↓, 월 임대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 연 2.5% ※ 별도 임대보증금 적용받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전환 불가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X 0.025(2.5%) ÷ 12(개월) = 추가 월임대료 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1회 신청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상호전환 신청은 기본조건으로 계약 이후에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요청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 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2025. 12. 26.)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유형

- 아래의 신청 유형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12. 26.)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유형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유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지정기간만료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대학생 유형 관련 세부 기준

인정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졸업유예자·대학원생은 대학생 유형 제외(졸업유예자 및 대학원생은 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으로 지원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만 대학생으로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최종 학기 재학 중인 경우 입주일과 무관하게 대학생으로 신청(모든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 수료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 □ 복학(입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입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 □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재학 중인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취업준비생 유형 관련 세부 기준

<p>인정 대학교</p>	<p>□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단,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p>
<p>인정 고등· 고등기술학교</p>	<p>□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등) ※ 중학교·해외고등학교는 제외</p>
<p>직장 재직 여부</p>	<p>□ 직장 재직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유형을 기준으로 판단(수급자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p>
<p>기타</p>	<p>□ 본 공고의 경우 2023. 12. 27. 이후 졸업(수료) 및 중퇴자 지원 가능 □ 자격요건 충족 시 대학원 재학 여부 무관 □ 졸업예정증명서로 취업준비생 증빙 불가(모든 학기를 이수한 졸업유예자만 취업준비생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료증명서 제출) □ 졸업(수료) 및 중퇴한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p>

• 청년 유형 관련 세부 기준

<p>나이</p>	<p>□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본 공고의 경우 1985. 12. 27. ~ 2006. 12. 26. 출생자 지원 가능)</p>
<p>기타</p>	<p>□ 직장 재직여부 무관(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유형 선택하여 지원 가능</p>

■ 신청 순위

순위	자격	상세 요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차상위계층 가구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일반	<input type="checkbox"/>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input type="checkbox"/>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4,56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input type="checkbox"/>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input type="checkbox"/>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순위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의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①~⑦)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신청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최대 6배수 선정(동점자 모두 서류대상자 선발)

[당첨자 선정] 신청자 신청순위 → 배점표 합산 →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 → 무작위 전산추첨

■ 가점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가점사항

(표2) 가점사항 배점표

적용 대상	가점 항목	내용	배점
1순위	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	3
	②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공통	③ 부모 무주택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 사망 등으로 인한 부모 부재 시 인정 가능	2
공통	④ 장애인(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2
	⑤ 장애인(가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1
2·3순위	⑥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3
공통	⑦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3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

※ 청약신청 시 신청순위 및 신청유형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 (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1순위 '수급자'로 신청하더라도 가점사항 선택란에 '수급자' 선택 안 할 경우 가점인정 불가)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본인)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 아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1인가구(+20%p)	2인가구(+10%p)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50% 이하	2,518,715	3,286,202	3,813,487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 이하	4,317,797	6,024,703	7,626,973

-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 3순위 신청자의 소득·자산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4. [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모든 소득(근로+사업+재산+기타)을 합산합니다.
 -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심사 대상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 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전후로의 금융자산 평가액 변동에 대해서는 소명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표3)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임대인의 경우)
자동차		•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예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 조회방법

※ 주택관리번호: 2025980145

구분	조회 방법
인터넷 이용 가능한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기타 임대주택용] '맞춤형 임대주택' 선택 → 주택관리번호 (숫자 10자리) 입력 후 조회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인쇄하여 제출
인터넷 이용 불가능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주택관리번호(숫자 10자리)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 인쇄하여 제출

※ 조회가능기간: 2025. 12. 29.(월) ~ 2026. 4. 10.(금)

■ 모집일정(요약)

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신청접수	서류제출	입주자격 검증	당첨자 발표	주택공개	계약체결	입주
2025. 12. 26.(금)	2026. 1. 12.(월) ~ 1. 14.(수)	2026. 1. 19.(월) ~ 1. 23.(금)	2026. 3월~5월	2026. 5. 22.(금) 17:00	2026. 6. 1.(월) ~ 6. 8.(월)	2026. 6. 9.(화) ~ 6. 12.(금)	
인터넷	인터넷	등기우편	등기우편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공개주택 현장방문	· 전자계약 (인터넷) · 대면계약 (SH공사)	

- * 입주기간은 2026. 6. 29.(월) ~ 2026. 8. 27.(목) 예정
- * 인터넷청약 신청접수: 2026. 1. 12.(월) 10:00 ~ 1. 14.(수) 17:00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 1. 16.(금) 예정
- * 서류제출: 서류심사 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 주택공개: 법정공휴일('26. 6. 3.(수):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및 주말은 주택방문 불가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격 검증: 제출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무주택 심사, 소명절차 등
- * 소득, 자산, 자동차, 주택소유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표4) 공급일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신청접수 (온라인)	'26. 1. 12.(월) 10:00 ~ '26. 1. 14.(수)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모바일)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 (PC 및 모바일 가능) ·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등)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6. 1. 16.(금)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대상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 [인터넷청약시스템-대상자조회·제출-서류심사대상자 조회]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 · ARS 조회 : 1600-3456 · 서류심사 대상자는 모집호수의 3~6배수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26. 1. 19.(월) ~ '26. 1. 23.(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별도 연락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6. 1. 19.(월) ~ 2026. 1. 23.(금) ※ 2026. 1. 23.(금)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방문제출, 일반우편 제출 불가) -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청년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2026. 3. ~ 2026. 5. (대상자에 개별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신청순위별 상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의 소득·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입주자발표	2026. 5. 22.(금)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당첨결과 조회 또는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 • ARS 조회 : 1600-3456
사전점검	'26. 6. 1.(월) ~ '26. 6.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개입니다. • 공개기간 내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연락하여 열람 방법 협의 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26. 6. 3.(수):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및 주말은 주택방문 불가
계약체결	'26. 6. 9.(화) ~ '26. 6. 1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전자)계약 기간: 2026. 6. 9.(화) ~ 6. 11.(목) • 방문 계약 기간: 2026. 6. 12.(금)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 계약 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입주	'26. 6. 29.(월) ~ '26. 8. 2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반드시 입주 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4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인터넷 청약)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1. 12.(월) 10:00 ~ 2026. 1. 14.(수) 17:00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신청 당시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잘못된 수신처 입력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방법

"24시간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약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사전 준비사항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11종) 중 1개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청약 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이니텍]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시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뱅크샐러드, 토스,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은 간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총11종)
- 신청자격, 가점사항 등 입력사항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

- 인터넷 청약기간은 2026. 1. 12.(월) 10:00 ~ 1. 14.(수) 17:00이며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순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신청순서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을 PC로 취소 후 재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은 청약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청약 마감일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자격요건(해당신청 자격, 무주택여부 등),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 자격 결격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착오 등으로 본인이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신청자격, 가점사항 등 입력사항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순위 및 신청유형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1순위 '수급자'로 신청하더라도 가점사항 선택란에 '수급자' 선택 안 할 경우 가점인정 불가)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신청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물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청약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기재로 신청한 경우 결격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제출 안내

-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별도의 등기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명단 게시 및 ARS 조회로 서류심사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2025. 12. 2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900101-1234567)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방법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일시	□ 2026. 1. 16.(금) 예정
	방법	□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단 게시 □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ARS 조회
	선정 기준	□ 신청순위 → 가점사항 총점이 높은 순으로 공급호수의 3~6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별 공급호수에 따라 배수율 적용: 3배수(공급호수 10호 초과), 5배수(공급호수 10호 이하), 6배수(공급호수 5호 이하) □ 배수 내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 총점이 같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별도 추천 없이 모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	□ 발송: 2026. 1. 19.(월) ~ 2026. 1. 23.(금) 이내 소인 분까지 유효
	방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제출, 일반우편 제출 불가)
	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청년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유의 사항	□ 등기우편 외의 방법(일반우편 포함)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간 이외 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별도 안내 없이 탈락)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가점 취소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부재중, 해외체류, 수신거부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 시 탈락/가점취소 처리합니다. □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급담당부서 이외의 콜센터 등과의 상담 내용은 필요 서류 및 서류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반납하지 않습니다.
(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 공통 제출서류: 서류심사대상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신청유형 증빙서류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생: 재학증명서 휴학생: 휴학증명서, 공사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제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공사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제출) 	해당교육기관 붙임양식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발급)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수급자 등 이유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발급 시 자격 이력이 갱신 및 조회되지 않는 경우) 취업준비생 자격 확인 서류 ①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②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③ 졸업유예자: 수료증명서 ④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해당교육기관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자격증명 관련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본인 정자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부모 무주택 가점(2점) 해당자 및 2순위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정자체 서명 - 심사대상이 되는 부모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름 ①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② 부모 이혼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별도양식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준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 본인의 신청 자격(순위 및 가점)에 따른 제출서류

해당 자격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처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서류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1순위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2·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2순위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정자체 서명 - 3순위 : 신청자 본인의 정자체 서명 - 부모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르며, 상세내용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 첨부자료 참조 ①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② 부모 이혼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별도양식
기타 가점사항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본인) 및 장애인 가구: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저축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청약자격확인’에서 발급 → [기타 임대주택용] ‘맞춤형 임대주택’ 선택)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5. 12. 26. ※ 발급관리번호(주택관리번호): 2025980145 (확인서 발급 시 입력코드) ※ 가점사항 중 소득기준 50% 이하, 부모 무주택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범정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별도 제출 서류 없음) 	행정복지센터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관련 유의사항 안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12. 26.) 이후(입주자 모집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순위확인 불가)하며, 이 경우 가점인정이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점인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 서류	내용(해당자만 제출)	발급처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혼내역 표기) ※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 기준' 참조 ※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내역(배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불가할 경우 제적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6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격 및 가점사항 부적격 소명

일시	□ 2026년 3월~5월[금융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법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가점사항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대상(2·3순위)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의 자격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 처리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추천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및 호실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무주택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천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 선정된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전산 무작위추첨에 의해 이뤄지며, 배정된 호실 이외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예비자 선정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순번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7

최종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입주자 발표(예정)일	2026. 5. 22.(금) 17:00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입니다.
확인방법	□ 공사 홈페이지 우측 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 대상자 조회·제출 → 당첨자 조회 □ 공사 콜센터 ARS 당첨자 조회 : ☎1600-3456 □ 공사 홈페이지(공고 및 공지) 명단 게시 □ 계약 안내문 발송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당첨자에게 계약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등으로 등기우편이 도달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호실 이외(공실여부 관계없음)로 호실 변경 입주는 불가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 사유가 있을 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합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계약 및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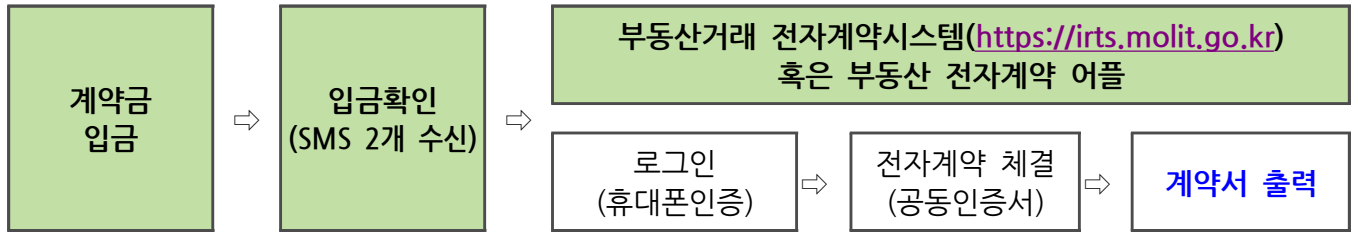
■ 당첨자 주택공개(주택 사전점검)

공개기간	□ 2026. 6. 1.(월) ~ 6. 8.(월) [공개시간: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법정공휴일(26. 6. 3.(수):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및 주말은 주택방문 불가
공개절차	□ 공개기간 중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열람 방법 협의 후 해당주택을 열람해야 합니다.(개별 임의 방문 불가) □ 당첨된 주택에 방문하여 사전점검 후 “주택사전점검표”를 제출 - 온라인(전자)계약 시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유선 연락 후 주택사전점검표 제출 - 방문(서면)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 주택사전점검표를 직접 제출 □ 지역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10. 문의처(39p ~ 40p) 참고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합니다. (당첨 주택 외 타주택 방문이나 입주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불가) □ 주택 공개일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

○ 온라인(전자)계약 기간: 2026. 6. 9.(화) ~ 6. 11.(목)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와 한국부동산원의 문자 수신 후 온라인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 방문(서면) 계약 기간: 2026. 6. 12.(금)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계약체결	□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증빙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에는 관계 입증 서류를, 제3자(대리인)가 대리할 경우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 입금 내역 확인 서류 ④ 매입임대주택 생활수칙 및 동의서(공사 소정양식) ⑤ 주택사전점검 확인서		
	직계가족 또는 제3자(대리인) 내방 시	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①~⑤) 외	직계가족 대리 시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대리인) 대리 시	㉢ 대리인(제3자) 신분증 ㉣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1통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 입주

기 간	□ 2026. 6. 29.(월) ~ 2026. 8. 27.(목)
안 내	□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반드시 입주 2주(14일) 이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사항은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의 목적물을 우리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6조) □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는 불가능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 유선(☎1600-3456)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나 주소 변동사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모집 공고 관련 안내를 송달받지 못하여 추가 서류 또는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계약 불참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인이 기혼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부모님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 심사를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주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복수 주택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 입력(순위 등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등)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자격, 순위, 소득구간 등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예정자 또는 입학 예정자의 자격으로 신청한 사람은 공사 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서약) 및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입·복학 후 1개월 이내)해야 하며,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로 등기우편과 문자(SMS)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유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전형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미제출 탈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탈락자 제출서류는 심사 종료 후 일괄 폐기)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순위에 한하여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 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가점 취소/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2025. 12. 26.)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본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합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자산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발표일 이전에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으며 모든 신청자의 전형 종료 후 (소명 절차 등) 일괄 발표 합니다.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예비자 공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예비자 공급 시기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입주자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입주대상자라도 입주자격 관련 추가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 하여야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미계약취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입주지정 종료일 전까지 계약해지 신청하여야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신청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총 10년)하며, 신청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 ↔ 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자격에 따른 임대 조건으로 갱신 계약해야 합니다. •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최장 20년)이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의 재계약 요건(소득, 자산 등) 충족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자격요건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 본 공고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며, 재계약 시점에 임대주택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전의 최초 금액으로 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계약 이후(입주 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기본(할증)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의 최대 60%까지)도 가능합니다. • 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전세형으로서 임대료의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 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대출여부 조회하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며 상환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이 가능한 경우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우리 공사는 금융권 대출 관련 문의를 받지 않으며, 금융권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표기 및 면적 등)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만 입주 가능하며, 입주 후 관할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와 함께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타 청년 매입임대주택 포함)의 기 당첨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최종 입주자 발표 후 해당자 별도 통보 및 입주 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최종 확인) • 신청자의 부모가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가 기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동물을 키우는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으니 계약 전에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관리비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커뮤니티실 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간이 존재하여 향후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 등 입주자 자치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활동의 운영 및 공동체 공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입주민은 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공동체 공간에 대한 공동생활 질서 의무(소음, 무단투기, 건물 내 흡연 등 금지)가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과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양도 전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전대·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로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주택공개, 주택입주, 상호전환, 재계약 :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기 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주 소	
강남 주거안심종합센터	강남구	(02)2086-9800~1
	강남구 선릉로 615, 썬라이더빌딩 4층	
강동 주거안심종합센터	강동구	(02)6946-3600~1
	강동구 상일로 6길 51, 다올빌딩 5층	
강서 주거안심종합센터	강서구	(02)2657-8100~1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 10단지 M-Tower(오피스동) 2층	
관악·동작 주거안심종합센터	관악구, 동작구	(02)828-5100~1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상도SH빌 임대상가 101호	
구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공개 문의 제외)	구로구	(02)6340-9000~1
	구로구 오리로 1102-6, 천이빌딩 3층	
금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공개 문의 제외)	금천구	(02)3668-5000~1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20층	
구로금천 주택공개 지원센터 (주택공개 문의 전담)	구로구, 금천구	(02)852-8977~8
	금천구 가산로91, 오름오피스텔 커뮤니티실(1층)	
노원 주거안심종합센터	노원구	(02)3399-0000~3
	노원구 덕릉로 688, 우리빌딩(기업은행 상계역지점) 4층	
도봉 주거안심종합센터	도봉구	(02)6098-1200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2층	
동대문 주거안심종합센터	동대문구	(02)6496-5400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5·6층	
마포 주거안심종합센터	마포구	(02)380-0100~1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기업은행 마포역지점) 10층	
서초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초구	(02)6990-5500
	서초구 방배로 127, 청오빌딩 4·5층	

기 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주 소	
성동 주거안심종합센터	성동구	(02)6990-5200
	성동구 왕십리로 21나길 5, 2층	
성북·강북 주거안심종합센터	성북구, 강북구	(02)944-8000~1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삼양신희본점) 11층	
송파 주거안심종합센터 (주택공개 문의 제외)	송파구	(02)3400-4700~1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 톨관 9층 S19호	
송파 주택공개 지원센터 (주택공개 문의 전담)	송파구	(070)5029-3409
	-	
양천·영등포 주거안심종합센터	양천구	(02)2620-6700~1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용산구	(02)2087-6601~2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아파트 101동 2층	
은평·서대문·종로 주거안심종합센터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02)6910-9400~1
	은평구 진관2로 15-34, 3층	
중구 주거안심종합센터	중구	(02)6909-9300~1
	중구 다산로 210, 흥진빌딩 8층	
중랑·광진 주거안심종합센터	중랑구, 광진구	(02)490-1700~1
	중랑구 봉화산로 165, 신내12단지 상가 201호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2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표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별표2. 소득·자산 산정방법, 항목 설명 및 자료출처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장기카드대출상품(카드론)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1) 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소득·재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재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재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정기 공고일정

일반
매입임대주택
2월 · 8월

청년
매입임대주택
6월 · 12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월 · 9월

장기
미입대주택
2월 · 8월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